

「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년 9월 26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17년 10월 16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31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17년 10월 16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)

가. 제안이유

-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내용 중 분묘 설치기간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분묘의 설치기간(안 제7조)
 - 제7조제1항 중 “15년”을 “30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15년씩 3회”를 “30년 1회”로 함.
- 사용료 등(안 제16조)
 - 분묘의 설치기간 15년씩 3회를 30년 1회 개정으로 인하여 공설묘지 사용료를 15년에서 30년으로 변경하고자 함(별표 2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박용호)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분묘의 설치기간을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고 설치기간의 연장기간도 현행 한번에 15년씩 3회인 것을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, 상위 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 1부.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7조제1항 중 “15년”을 “30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15년씩 3회”를
“30년 1회”로 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2]

장사시설의 사용료 등(제16조제1항관련)

평창군공설묘지(평창군 방림면 서동로 1741-36)

(단위 : 원)

구 분	기 준	계	사 용 료	관 리 비
분 묘 (매장)	단장 (6.75m ²)	2,000,000	1,520,000	480,000
	합장 (9.9m ²)	3,000,000	2,280,000	720,000
봉안시설	봉안담 1구당	400,000	400,000	-
	봉안당 1구당	600,000	600,000	-

※ 사용년한 : 30년 사용기준임.

읍·면(마을) 공동묘지

(단위 : 원)

구 분	기 준	계	사 용 료	관 리 비
분 묘 (매장)	단장 (6.75m ²)	4,000	4,000	
	합장 (9.9m ²)	6,000	6,000	